

BAO 193261

1953. 11. 3  
제 3 종 우 편 봉 인 가

편집 및 발행 총 무 처  
전 화 70-4331  
인 쇄 대 한 공 론 사  
대 표 전 화 75-6161  
판 보 부 치 통 75-6315

제7244호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1976. 1. 13. (화)

## 차 례

## 별 례

## 부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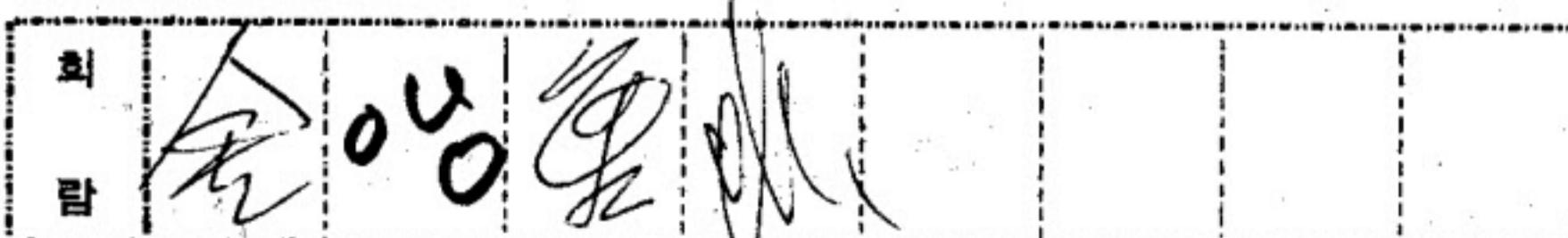
○체신부령 제562호(체신부현업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증개정령)..... 3

## 각 라

## 고 시

○외무부고시 제 1 호 (부산시 하수도사업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약정)	3
○전설부고시 제 2 호(하천의 접용<공작물의 설치 및 유수인 용>허가)	3
○체신부고시 제 9 호 (전신전화취급소설치)	7
○체신부고시 제 10 호 (한국—미국 본토<하와이·아拉斯카제외>간 국제전화요금개정)	7
○전파관리국고시 제 419 호(면허부여)	7
○전파관리국고시 제 420 호(무선국폐지)	8
○전파관리국고시 제 421 호(무선국허가)	8
○전파관리국고시 제 422 호(무선국폐지)	8
○전파관리국고시 제 423 호(무선국폐지)	8
○전파관리국고시 제 424 호(무선국허가)	9
○전파관리국고시 제 425 호(무선국허가)	9
○전파관리국고시 제 426 호(무선국허가)	10
○전파관리국고시 제 427 호(면허부여)	10
○전파관리국고시 제 428 호(전파관리국고시 제 83 호 중변경)	10
○전파관리국고시 제 429 호(무선국재허가)	10

(이면계속)

2503 A-1-4  
1969. 1. 31. 송인

체신민국정부

190×268신문 35g/m<sup>2</sup>1  
377

○전파관리국고시 제430호(무선국제허가).....	10
○전파관리국고시 제431호(무선국제허가).....	11
○전파관리국고시 제432호(무선국제허가).....	11
○전파관리국고시 제433호(무선국제허가).....	11
○전파관리국고시 제434호(무선국제허가).....	11
○전파관리국고시 제435호(무선국제허가).....	12
○전파관리국고시 제436호(무선국제허가).....	12
○전파관리국고시 제437호(무선국제허가).....	12
○전파관리국고시 제438호(무선국제허가).....	12
○전파관리국고시 제439호(무선국제허가).....	13
○전파관리국고시 제440호(무선국제허가).....	13
○전파관리국고시 제441호(무선국제허가).....	13
○전파관리국고시 제442호(무선국제허가).....	13
○전파관리국고시 제443호(무선국제허가).....	14
○전파관리국고시 제444호(무선국허가).....	14
○전파관리국고시 제445호(무선국중폐지).....	14
○전파관리국고시 제446호(무선국허가).....	14
○전파관리국고시 제447호(무선국허가).....	15
○전파관리국고시 제448호(무선국허가).....	15
○전파관리국고시 제449호(무선국중개정).....	16

### 공 고

○건설부공고제 3 호 (도로의 사용개시 및 사용폐지구간).....	16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11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6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12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6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13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5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17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7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19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7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29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7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31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7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32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8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46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8
○공업진흥청 공고제 1, 247호(한국공업규격표시지정품목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	18
○포항지방해운국공고제 94호 (해기원 국가시험 합격취소).....	18

### 사 령

○인사방령 .....	15
-------------	----

### 회 보 란

○공무원사망 (총무처).....	19
○압수물환부공고 (대구지방검찰청).....	19
○정 정 (건설부·보건사회부).....	24

**부****령**

## ◎체신부령제562호.

체신부현업관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증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76년 1월 10일

체신부장관

체신부현업관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  
관한규칙증개정령

체신부현업관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증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우체국란의 서울특별시란 중 서울역 전우체국 및 서울철도우체국의 위치 "중구 동자동"을 각자 "중구 봉래동 2 가"로, 서울신당동우체국의 위치 "성동구 신당동"을 "중구 신당동"으로, 서울 천호동우체국의 위치 "성동구 천호동"을 "강남구 천호동"으로, 서울송파우체국의 위치 "성동구 전락동"을 "강남구 가락동"으로, 서울양재동우체국의 위치 "성동구 양재동"을 "강남구 양재동"으로, 서울홍인동우체국의 위치 "성동구 홍인동"을 "중구 홍인동"으로, 동 "서울 대방동 관악구 대방

동"란을 "서울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하고, 동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란 다음에 "서울 한강 용산구 동부이촌동"란을 추가하며, 동 부산시란 중 부산대연동우체국의 위치 "부산진구 대연동"을 "남구 대연동"으로, 부산 광안동우체국의 위치 "동래구 광안동"을 "남구 광안동"으로, 부산 감만동우체국의 위치 "부산진구 감만동"을 "남구 감만동"으로, 부산 문현동우체국의 위치 "부산진구 문현동"을 "남구 문현동"으로 하고, 동 경기도란 중 "경기 화천 고양군 신도읍 화천리"란 다음에 "경기 연풍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란 및 "성남 태평동 성남시 태평동"란을 각자 추가하며, 동 전학북도란 중 "전주 청석동 전주시 청석동"란을 "전주 다가동 전주시 다가동 1 가"로 하고, 동 경상북도란 중 "대구 태평로 대구시 북구 태평로"란을 "대구 고성동 대구시 북구 고성동 3 가"로, "대구 원대동 대구시 서구 원대동 5 가"란을 "대구 노원동 대구시 북구 노원동 2 가"로 하며, 동 경상남도란 중 우체국의 명칭 "신노량"을 "남해 노량"으로, 동 "울산 남구 울산시 서부동"란 다음에 "월내 양산군 장안면 월내리"란을 추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외무부고시제 1 호

## 부산시 하수도사업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기술협력을위한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 1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5년 10월 14일자 및 1976년 1월 7일자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76년 1월 7일자로 발효한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6년 1월 7일

외무부장관

(독일측 제안각서)

1975. 10. 14

각 하,

본인은 부산시 하수도 사업의 협력에 관한 1972년 4월 10일자의 협정에 언급하고, 또한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 체결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379

1.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관한 기술 협력을 1974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고, 기술자들이 수립한 현재까지의 계획을 토대로 시 하수 및 홍수방지 계획의 제1단계 건설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래의 제 활동에 의한 본전 사업상의 양국간 협력을 확대한다.

(a) 홍수 및 침식방지 조치를 포함한 시 구역내 산복 고지대의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시범 계획

(b) 종합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한 제4지구(동천)에 있어서의 긴급조치를 위한 건설 계획

(c) 제5지구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추가 현황조사 및 계획

(d) 동남산업지대의 개발을 위한 생태학적 조치 및 조건에 관한 한국의 종합계획을 위한 준 거기준의 수립

(e) 다음의 것을 위한 천설계획 및 입찰문서의 작성

—용호동 진창 및 분뇨 정수 설비

—총 연장 약 10.5킬로미터의 제4지구 동천 계곡내의 폐수 및 우수 차집거 시설

—제4지구의 임시 하수 설비

—42킬로미터의 차집거 시설 및 총 연장 약 88킬로미터의 우수 및 하수 시설로 이루 어지는 제5지구의 우수 및 하수 시설

(f) 세항(b)에 언급된 긴급 건설조치 및 세항(e)에 열거된 제1건설 단계의 건설조치의 시행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아래의 제 비용을 부담한다.

(a) 이미 본전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가의 일부 연장 또는 단기근무 전문가의 추가 파견 및 독일연방공화국내의 독일인 전문가의 참여

(b) 1975년 봄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5개월동안 제1항(e)에 규정된 정수 설비 계획에 협력 하는 4명의 한국인 전문 기사에 대한 보수(항공료, 교통비, 봉급 및 보험료)

(c) 독일당국과의 교섭을 위한 부산시 기술행정관 1인에 대한 교통비 및 체재비

(d) 독일기관에서 약 10개월간의 하수설비 및 배수설비의 운영, 관리를 위한 훈련과 2개월간의 어학훈련을 받을 3명의 한국인 전문가에 대한 교통비 및 체재비

e) 하기 장비의 공급

추가적 승용차 1대

하수펌프 4대

배수기 1대 및 각종 부속품

상기 장비는 파견된 전문가가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역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3. 한국에 파견된 전문가는 제1항 (e)에 규정된 제반 활동의 380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능과

책임을 진다.

- (a) 고위감독을 포함한 건설계획 및 동 공사일정의 수립과 공개입찰에 관한 자문적 지원
- (b) 건설 사업의 준비 및 수행을 위한 기술적·체계적 및 행정적 제조건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c) 입찰평가 및 발주에 관한 자문
- (d) 조달 및 건축(보증)에 관한 검사를 포함하여, 특히 특수건축자재의 사용에 관한 건설사업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고위감독에의 참여

4.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a) 1975년부터 1977/78년까지 제1항(b) 및 (e)에 언급된 건설사업을 수행하여 적기에 그 책임을 확보함.
- (b)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제공한 일체의 장비, 차량 및 기타 품목의 유지책임을 짐.
- (c) 제1항에 언급된 사업을 수행할 아래의 전문가 및 보조원을 배속함.

1명의 한국족 사업소장(부산시 건설국장)

1명의 한국족 사업부소장(하수과장)

4명의 본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자격을 구비하고 영어, 독일어 회화가 가능한 민간 기사

4명의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훈련을 받고 귀국한 한국인 전문가

5명의 제도가

1명의 영어, 독일어 회화가 가능한 여비서

2명의 현장 작업 및 기타 잡무를 위한 상용 보조원

1명의 통역인

사무실 요원 및 청소부

(d) 제1항에 의거한 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에 한국인 기사를 참여시키며, 부산시 위생연구소 및 시험실험실 또는 기타의 실험실에 계획단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모든 하수 및 토양실험을 수행할 것을 위임함.

(e) 상기 제2항(a)에 의거하여 파견된 전문가들이 현재까지 제공된 숙소 및 필요한 경우 장비되고 가구가 설치된 추가 숙소를, 그들의 임무가 사실상 종료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함. 추가 숙소가 이용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용한 호텔 숙소를 제공함.

(f) 비품 및 장비를 포함한 현재의 사무실을 파견된 전문가들의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함.

(g) 사업초기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제공한 차량과 제2항(e)에 언급된 추가 차량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유류, 정비 및 보험비용을 부담함.

(h) 제2항(a)에 의거하여 파견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국족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

른 활동을 위하여 한국측 기사, 기술용역회사, 건설청부인, 조달회사 및 여타 관련기관에게 필요한 기술적 체계적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함.

- (i) 종합계획의 기술적 요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파견된 전문가들이 건설국장과 협의하여 부산시 행정구역내의 홍수방지, 배수 및 하수 제거 설비의 계획과 건설 및 분뇨 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시 관계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
- (j) 계획단의 독일인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과업 수행상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행하고 특히 본건 사업과 관련한 이전의 모든 연구결과, 기록, 문서, 계획, 지도, 해도, 항공사진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산하기관에 그와 같이 지시함.
- (k) 파견된 전문가들이 본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조사, 질의, 시험, 시굴, 측량 및 기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동 업무를 수행함.
- (l) 독일인 전문가와 협의하여 제2항(d)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초청될 3명의 한국인 전문가를 선발하며 한국의 규정에 따라 제반 수당을 포함한 그들의 급료를 계속 지불함.
- (m) 세항(a) 내지 (g)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

5.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a)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및 그 가족에게,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보호를 명기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며 동 신분증명서에는 정부기관에 의한 협조 약속이 포함된다.

6.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전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 내지 제9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칼·로이터리츠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아래 회답각서)

1976년 1월 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10월 14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 내지 제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

고, 또한 자하의 자서와 본 회답자서가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여 동 약정은 금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자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박동진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주차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찰·로이터리츠 자하

◎건설부고시제 2호

다음과 같이 하천의 점용(공작물설치 및 유수 인용)에 대한 허가를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한다.

1976년 1월 8일

건설부장관

허가년월일	위치	목적	허가내용	의뢰처	자자
1976. 1. 8	전북 완주군 조촌면고 랑리	농업용수확보	1. 콘크리트 취입보 1개소 H = 2.2m, L = 218.5m 2. 점용면적 : 5,560m <sup>2</sup> (1,682평) 3. 인수량 : 0.498m <sup>3</sup> /sec	전주시 중노송동 2가 전주 381-1 전주농지개량조합	장이문구

◎체신부고시제 9호

공중통신업무위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전화취급소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6년 1월 9일

체신부장관

1. 설치사항

취급소명 위치 취급업무 취급시간  
두문인답리하인 경남진양군 전신(구 24시간  
답전신전화취급 금곡면인답 불, 무배)  
소 리 691 통화

2. 시행일 : 1976년 1월 6일

◎체신부고시제 10호

한국~미국본토(하와이 아라스카 제외) 간 국제전화 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국제전신전화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6년 1월 9일

체신부장관

요일	요금 단위	가. 개정 요금		대화자지정통화		번호지정통화	
		최초 3분간	추가매분	최초 3분간	추가매분	최초 3분간	추가매분
평일 및	\$	13.50	3.00	9.00	3.00		
일요일	원	6,480	1,440	4,320	1,440		
나. 일요 감액 통화의 폐지							
현재의 일요감액통화제는 이를 폐지한다.							
다. 실시일 : 1976년 1월 18일							

◎전파관리국고시제 419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1항 및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면허를 부여하고 동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0일

전파관리국장

무선종사자면허부여내역			
특수급 무선통신사 (특율)	1명		
면허증번호	본	적	성
752318	경	남	홍
			387
			(계 1명)

## ◎전파관리국고시제420호

전파관리국고시 제528호(1956. 2. 24)로 고시한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1975년 12월 20일

전파관리국장

## 폐지무선국내역

선 박 명	호출부호	시 설 자 명	허가번호	허 가 일 자	비 고
목 포 호	HMBK	삼성선박(주)	620006	1962. 1. 1	화 물 선

## ◎전파관리국고시제421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0일

전파관리국장

## 1. 허가년월일과번호

1975년 12월 8일 선허 제7520775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동성수산(주)장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어선 702동성호(근해)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6NIS

##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1 150 0.1A1 410 454 500 512  
A2 210 2.1A2

A1 250 0.1A1

C : 4183.5 6275.25 8367 12550.5 16734

W<sub>1</sub> : 4204 6306 8408 12612 16816W<sub>2</sub> : 4225 6337.5 8450 12675 16900

A3J 50 2.8A3J C : 2182(2183.4)

A3H 20 2.8A3H

A3J 50 2.8A3J W : 2115 (2116.4)

2638 (2639.4)

2696 (2697.4)

2756 (2757.44)

2595 (2596.4)

A1 85 0.1A1 C : 2091

W : 2015 2538 2050 3224

## 6. 기타 필요한 사항

RADER 10 KW 4000 PO 9375 MHz

RADIO DIRECTION FINDER 1

## ◎전파관리국고시제422호

전파관리국고시 제582호 (1956. 7. 25)로 고시한 무선국을 아래와 같이 폐지한다.

1975년 12월 20일

전파관리국장

## 폐지무선국내역

선 박 명	호출부호	시 설 자 명	허가번호	허 가 일 자	비 고
장 항 호	HMBV	대한해운공사	620011	1962. 1. 1	화 물 선

## ◎전파관리국고시제423호

전파관리국고시 제138호 (1975. 6. 15)로 고시한 무선국 중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1975년 12월 22일

전파관리국장

## 폐지무선국내역

선 박 명	호출부호	시 설 자 명	허가번호	허 가 일 자	비 고
유 성 호	6MKV	이 석 재	7220061	1972. 6. 12	여 선

384

8

## ◎전파관리국고시제424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2일

전파관리국장

##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5년 12월 16일 선허 제7520783호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삼익상선대표 이종록

## 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화물선연온호(원양)

##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6NDT(6NDT-20)

##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1 500 0.1A1) 410 425 454 468 480 500 512  
A2 550 2.1A2)

A1 1000 0.1A1

#1 C : 4184 6276 8368 12552 16736 22255

#2 C : 4132.2 6273.3 8364.4 12546.6 16728.8

22234 4183.4 6275.1 8366.8 12550.2

16733.6 22238

W : 4194 6291 8388 12582 16776 22287.5

4204.5 6307.75 8409 12613.5 16318

22276.5

A3 J 1000 2.8A3 J

C : 4136.3 (4237.7) 8268.4(8269.8)

12403.5 (12404.9) 16533.5(16534.9)

22073.5(22074.9)

W : 4098.0(4099.4) 3230(8231.4)

125354.5(125355.9)

16484.5(16845.9) 22038.5(22039.9) 4072.4

(4083.8) 8204.4(8205.8) 12382.5(12383.9)

16512.5(16513.9) 22045.5(22046.9) 4123.6

(4125) 8262(8263.4) 12361.5(12362.9)

16491.5(16492.9) 22066.5(22067.9)

F3 20 16 F3 156.80 156.30 156.40 156.50

156.55 156.60 156.65 156.70

156.90 157.00 157.10 157.15

157.20 157.25 157.30 157.35

A1 50 0.1A1

A2 130 2.1A2

410 425 454 468 480 500 512

A1 75 0.1A1

#1 C : 4184 6276 8368

#2 C : 4182.2 6273.3 8364.4 4183.4 6275.1

8366.8

W : 4194 6291 8388 4204.5 6306.75 8409

A2 6 2.1A2

A2 8 2.1A2

500 8364

## 6. 기타 필요한 사항

1. RADAR No.1 40KW 4000 PO 9375 MHz

No. 2 10 KW 4000 PO 9375 MHz

2. RADIO DIRECTION FINDER 1

3. AUTO-KEYER 1

4. AUTO-ALARM 1

## ◎전파관리국고시제425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2일

전파관리국장

##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5년 12월 17일 선허 제7520784호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근해상선(주)

## 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화물선탑라호(근해)

##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6NGW(6NGW-20)

##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주 A1 75 0.1A1) 410 425 454 468 480 500 512  
A2 105 2.1A2)

#1 C : 4185.5 6278.25 8371 12556.5

W : 4205.5 6308.25 8411 12616.5

4226.5 6339.75 8453 12679.5

W2 C : 4182.2 6273.3 8364.4 12546.6

4183.8 6275.7 8367.6 12551.5

W : 4195 6292.5 9390 12585 4205.5

6308.25 9411 12616.5

보 A1 50 0.1A1

A2 75 2.1A2

410 425 454 468 480 500 512

구명 A2 6.4) 2.1A2 500 8364

정 A2 11.2)

## 6. 기타 필요한 사항

1. RADAR 18KW 4000PO 9375MHz

2. AUTO-KEYER 1

9

305

## ◎전파관리국고시제426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2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5년 12월 19일 선허 제7520795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 금창 대표 김내규
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어선 77부광호(연해)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HMFM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1 100 0.1A1 C : 2091  
W : 2015 2050 2583 3224 1920 3872  
A3J 50 2.8A3J C : 2182(2183.4)  
A3H 20 2.8A3H  
A3J 50 2.8A3J  
W : 2115(2116.4) 2638(2639.4) 2696(2697.4)  
2756(2757.4) 2550(2551.4)  
A3J 10 2.8A3J C : 27821(27822.4)  
A3H 3 2.8A3H  
A3J 10 2.8A3J  
W : 27837(27838.4) 27885(27886.4)  
27901(27902.4)  
A3J 10 2.8A3J C : 27821(27822.4)  
A3H 3 2.8A3H  
A3J 10 2.8A3J  
W : 27837(27838.4) 27885(27886.4)  
27901(27902.4)
6. 기타 필요한 사항  
A3 1 6A3 C : 27821  
W : 27837 27885 27901  
RADAR 40 KW 4000 PO 9375 MHz  
RADIO DIRECTION FINDER 1

## ◎전파관리국고시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1항 및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면허를 부여하고 동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4일

전파관리국장

## 면허부여

면허번호	성명
752316	장성태
752317	임봉래

## ◎전파관리국고시제428호

전파관리국고시 제83호(1974. 2. 1)로 고시한 춘천문화방송국의 고시사항중 변경사항을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1975년 12월 31일

전파관리국장

(제 5 항)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1) 10A3 770 KHz 10kw (Pc)  
(2) 예비기 10kw (Pc)

## ◎전파관리국고시제429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01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한국방송공사장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방운산 T V 방송중계소(중계방송국)  
경남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38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지정무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6000 A5C 69MHz(CH-4 2kw(Pp) 실효복사전력  
F3 6.3kw(Pp))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0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76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10

## 한국방송공사장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예산부인 TV방송중계소(중계방송국)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지정무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6000 A5C F3 213 (CH-13) (수신 CH-9)  
1W (Pp) 실효복사전력 2.5W (Pp)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1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03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한국방송공사장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팔공산 TV방송중계소(중계방송국)  
경북 달성군 공산면 응수리 산 1번지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지정무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6000 A5C F3 183MHz(CH-8) 10kw (Pp)  
실효복사전력 85.1kw (Pp)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2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04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한국방송공사장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함백산 TV방송중계소(중계방송국)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황지리 산 176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지정무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6000 A5C F3 177MHz(CH-7) (수신 CH-9) 0.5kw (Pp)  
실효복사전력 2.8kw (Pp)

##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3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05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한국방송공사장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견월악TV방송중계소(중계방송국)  
제주시 봉개리 산 78-1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지정무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6000 A5C F3 85MHz(CH-6) 5kw (Pp)  
실효복사전력 15.8kw (Pp)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4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06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한국방송공사장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무동산TV방송중계소(중계방송국)

11

387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 96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지정무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6000 A5C F3 177MHz(CH-7) 10kw(Pp)  
 실효복사전력 85.1kw(Pp)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5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07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여수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여수문화방송국(표준방송)  
송신소 : 전남 여천군 둘산면 우두리 794-46  
연주소 : 전남 여수시 교동 596-2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HLAT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1) 10A3 1080KHz 10kw(Pc)  
(2) 예비기 1kw(Pc)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6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08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안동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안동문화방송국(표준방송)  
송신소 : 안동시 송현동 509

연주소 : 안동시 남문동 145-3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HLAW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1) 10A3 1020KHz 10kw(Pc)  
 (2) 예비기 1kw(Pc)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7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09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청주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청주문화방송국(표준방송)  
송신소 : 청주시 사천동 398  
연주소 : 청주시 남문로 1가 67-1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HLAX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 전력  
(1) 10A3 1290KHz 1kw(Pc)  
(2) 예비기 1kw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38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10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원주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원주문화방송국(표준방송)  
송신소 :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 1456

12

연주소 : 강원도 원주시 인동 242-16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HLSB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1) 10A3 1300KHz 10kw(Pc)

(2) 예비기 1kw (Pc)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전파관리국고시제439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11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충주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3. 무선국 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충주문화방송국(표준방송)

송신소 : 충주시 칠금동 427-1

연주소 : 충주시 성내동 142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HLAO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1) 10A3 1330KHz 10kw (Pc)

(2) 예비기 10kw(Pc)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전파관리국고시제440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12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재단법인 아세아방송국 이사장

3. 무선국 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아세아방송국(표준방송)

제주도 복제주군 애월면 구암리 490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HLDA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10A3 1570 KHz 250kw(Pc)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전파관리국고시제441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13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3. 무선국 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남양문화TV방송국(TV방송국)

송신소 : 제주시 개봉동 산 78-1

연주소 : 제주시 삼도동 106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HLAJ-TV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1) 6,000 A5C 201MHz(CH-11)

F3

영상 2KW(Pp)

음성 0.4KW(Pm)

실효복사전력 영상 30KW(Pp)

음성 6KW(Pm)

(2) 예비기 영상 1KW(Pp)

음성 0.25KW(Pm)

실효복사전력 영상 3KW(Pp)

음성 0.77KW(Pm)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전파관리국고시제442호

전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재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3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1월 1일 방허 제760014호

389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3. 무선국 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대구문화TV방송국(TV방송국)  
송신소 : 경북 달성군 공산면 팔공산  
연주소 : 대구시 동구 범어동 1번지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HLCT-TV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6,000A5C 195MHz (CH-10)  
F3  
영상 2KW(Pp)  
음성 0.4KW(Pm)  
(실효복사전력) 영상 26KW(Pp)  
음성 5.6KW(Pm)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 ◎전파관리국고시제444호

전파관리법 제 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5년 12월 17일 선허 제7520785호
-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세방해운(주)장
-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화물선 모닝선호(연해)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00 (6NJK-20)
-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3J 100 2.8A3J  
A3H 25 2.8A3H  
C : 2182(2183.4)  
A3J 100 2.8A3J  
W : 2198(2199.4) 2319(2320.4) 2638(2639.4)  
1880(1881.4)  
F3 10 16 F3  
C : 156.80  
W : 156.60 156.65 157.25 157.30 157.35  
A3 4 6A3 2182  
A2 8) 2.1A2 500 8364
- 기타 필요한 사항  
1. RADAR 10 KW 4000 PO 9375 MHz  
2. RADIO DIRECTION FINDER 1

## ◎전파관리국고시제445호

전파관리국고시 제530호(1968. 6. 13)로 고시한 무선국중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폐지무선국내역

선박명	호출부호	시설자명	허	기	허가일자	비고
315월	6KFN	공양물산	680497	1968.6	어선	
미호		(주)				

14

## ◎전파관리국고시제446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F3  
영상 5KW(Pp)  
음성 1KW(Pm)  
실효복사전력 영상 65KW(Pp)  
음성 12.5KW(Pm)

6.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유효기간 : 1978년 12월 31일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5년 12월 24일 선허 7520800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양근수

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어선 21옹길호(원양)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6NJJ

5. 전파형식 및 폭과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1 150 0.1A1) 410 454 500 512

A2 250 2.1A2) 410 425 454 468 480 500 512

A1 250 0.1A1

#1 C : 4184.5 6276.75 8369 12553.5

W : 4189.5 6284.25 8379 12568.5 4210.5

6315.75 8421 12631.5

#2 C : 4181.8 6272.7 8363.6 12545.4 4182.6

6273.9 8365.2 12547.8

W : 4189.5 6284.75 8379 12568.5 4200

6300 8400 12600

A1 100 0.1A1 C : 2091 W : 2050

A3J 50 2.8A3J) C : 2182(2183.4)

A3J 50 2.8A3J

W : 2198(2199.4) 2319(2320.4) 2638(2639.4)  
1880(1881.4)

A3J 10 2.8A3J

A3H 3 2.8A3H C : 27821(27822.4)

A3J 10 2.8A3J

W : 27837(27838.4) 27885(27886.4)  
27901(27902.4)

6. 기타 필요한 사항

1. RADAR No.1 50KW(P.P)  
No.2 10KW(P.P) 4000 PO 9375MHz

2. RADIO DIRECTION FINDER 1

#### ◎전파관리국고시제448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5년 12월 선허 제7520801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동양세멘트공업(주)장

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화물선 제현호(근해)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6NJJ (6NJJ-20)

5. 전파형식 및 폭과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1 400 0.1A1) 410 425 454 468 480 500 512

A2 400 2.1A2) 410 425 454 468 480 500 512

A1 500 0.1A1

#1C : 4184 6276 8368 12552 16736 22255

#2C : 4182.2 6273.3 8364.4 12546.6

16728.8 22234 4183.4 6275.1 8366.8

12550.2 16733.6 22238

W : 4194 6291 8388 12582 16776 22287.5

4204.5 6306.75 8409 12613.5 16818

22276.5

A1 50 0.1A1) 410 425 454 468 480 500 512

A2 50 2.1A2) 410 425 454 468 480 500 512

A2 6 2.1A2 500 8364

6. 기타 필요한 사항

1. RADAR NO.1 20KW(P.P)  
NO.2 10KW(P.P) 4000 PO 9375 MHz

2. RADIO DIRECTION FINDER 1

3. AUTO-KEYER 1

4. AUTO-ALARM 1

#### ◎전파관리국고시제447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5년 12월 26일 선허 제7520802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금창 대표이사

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어선 102부광호 (연해)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26부광호

5. 전파형식 및 폭과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3J 50 2.8A3J C : 2182 (2183.4)

A3H 20 2.8A3H C : 2182 (2183.4)

A3J 50 2.8A3J

W : 2115 (2116.4) 2638 (2639.4) 2696

(2697.4) 2756 (2757.4) 2550 (2551.4)

15  
391

A3J 10 2.8A3J C : 27821 (27822.4)  
 A3H 3 2.8A3H  
 A3J 10 2.8A3J  
 W : 27837 (27838.4) 27885(27886.4) 27901  
 (27902.4)

## 6. 기타 필요한 사항

RADAR 8 KW (P.P) 4000 PO 9375 MHz

## ◎전파관리국고시제449호

전파관리국고시 제595호(1956. 8. 27)로 고시한 무선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5년 12월 29일

전파관리국장

제 2 항중 시설자의 성명 및 또는 명칭란에  
 대한해운공사장을 성신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로

## 공 고

## ◎건설부공고제 3 호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사용개  
 시 및 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년 1월 9일

건설부장관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사 용	개	시	구	간	사	용	폐	지	구	간
일반국도	서산	~	대전선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산	29-3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산	29-		
"	"			부터 예산군 예산읍	신예원리	252-15	3부터 예산군 예산읍	신예원리	252-				
"	"			까지(1.98키로미터)			2까지(2.87키로미터)						
"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396-4부	좌동(0.99키로미터)						
"	"			터 263-22까지(0.784키로미터)									
"	"			충남 공주군 반포면	온천리	산43-5	좌동(1.129키로미터)						
"	"			부터 40-3까지(0.761키로미터)									

## ◎공업진흥청공고제1, 211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975년 12월 24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 규격번호 : KS F 4901  
 표시지정품목 : 규격명 : 아스팔트 펠트  
 표시허가심사기준 : 내용 : 생 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업진흥청공고제1, 212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975년 12월 24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F 5601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목재창및창틀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 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업진흥청공고제1, 213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975년 12월 24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F 4902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아스팔트루우핑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 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업진흥청공고제1, 217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975년 12월 24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 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D 3508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아아크 용접봉  
    실선재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 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업진흥청공고제1, 219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허가심사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제정 공고한다.

1975년 12월 26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 표시허가심사기준

공고내용 :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품목 규격번호 :

KS F 4601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품목 규격명 : 둘망태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 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업진흥청공고제1, 220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975년 12월 29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 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C 9311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전기모발전조기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 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업진흥청공고제1, 231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975년 12월 29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 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C 9613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가정용 소형 변

압기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 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업진흥청공고제1, 232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

17

1975년 12월 29일

공업진흥청장

393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C 9308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전기주우스박서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1, 246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년 12월 30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C 6502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텔코오드판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1, 247호**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심사기  
준을 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년 12월 30일

공업진흥청장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  
준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C 9312  
표시지정품목 규격명 : 전기보온밥통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포항지방해운국공고제94호**

해기원국가시험합격취소

당국에서 시행한 1975년도 제9회 해기사 국가  
(임시)시험에 합격한 다음 사람에 대하여 합격  
을 취소한다.

1975년 12월 31일

포항지방해운국장

응시종별 성명	생년월일	본적비고
병기사 하태용	1956. 1. 7	영일군 지행면 모포리 41 응시자격 비밀

**사령**

○인사발령

◎1976년 1월 10일자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외무부이사관 신동원(申東元)

주 상황총영사관 총영사에 보함  
(외무부 총무과장)

외무부이사관 김득보(金得寶)

주 캐나다대사관 근무를 명함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외무부이사관 박쌍용(朴雙龍)

외무부 미주국장에 보함

18  
(외교안전부 연구부 연구관)

392 외무부이사관 홍일(洪逸)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에 보함

(외무부 미주국)

외무부이사관

문 창 화(文昌華)

외무부 총무과장에 보함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외무부이사관

박 수 길(朴銖吉)

주 국제연합대표부 근무를 명함

(대 통령)

**회 보****○공무원사망**

다음 공무원이 사망하였기에 회보합니다.

1976년 1월 10일

총무처장판

소속및직위 : 순천지방철도청 광주보선사무소장

직 급 : 토목기정

성 명 : 조용길

사망일자 : 1976년 1월 2일

비 고 : 심장마비(뇌졸증)

**○공 고**

다음 룰전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첨에 환부를 청구하심을 바랍니다.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1976년 1월 8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연 사 건 번 호	도 연 수 번 호	피 의 자 또 는 죄 피 고 인	명 환 부 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1965	2085	이명환 부	고 성명불 상	1-4	약속어음 등	35점
1967	1537	김예동 사문서위조동행 사	이도경	1-32	차용금증서 등	32매
1968	81	신원이 일산물단속법위 반	성명불 상	1	환가대금	120원
	1594	최인호 특수절도	이용석	1-4	미제베아링 등	4점
	3267	신기효 직무유기	성명불 상	5-9	일기수첩 등	22점
		"	"	11	부조기록부	1책
	3408	신원식 뇌물제공	"	1-4	현금지출증명 등	5매
	4034	길희진 특수절도	"	2-3	검은색 등	2점

19

395

연 사 건 번 호	도 연 수 번 호	피의자 도 포 는 죄 피고인	명 환부인	압 수 률 전		
				번호	물 건	명 수 량
1968	4258	장인호 업무상 횡령	장인호	1	출고의뢰서	1매
	4270	진중철 폭력 행위 등	정상진 방소철	2.3. 5.*	한은 500원권 등	15,400원
	4294	김종남 사기 미수	박일용	1	잔액 200원이 들은 통장	1매
	4309	최소조 부정수표 법	최소조	1-3	수표, 영수증 등	9매
1970	4142	이명수 인장 위조 등	김완수 최복길	1-3	회사정관, 인장, 테이프	6점
	4303	성명불절 도상	성명불 상	1	자전거	1대
	6334	서홍균 횡령 정광	박수연	1	자서	1매
1973	2475	홍관연 "	박수연	4	홀치기원단	1필
	3765	임용기 절도	임용기	3	핑크이불	3개
1974	13	장춘택 "	강숙자	1-14	테타이 등	14점
	154	성무용 공문서 위조	배삼선	1	증명서	1매
	481	박전식 계량법	박전식	1	스프링 7 키로그램	1개
	681	정관돌 횡령	서팔수 정상준	1-2	약속어음, 경리장부	2점
	935	이종태 폭력 행위 등	조명수 조명수	48. 49.	손목시계	2개
	1123	김태봉 "	김상열	1	외투	1점
	1674	이호곤 "	박종현	13, 14	모포, 가방	2점
			윤여성	15, 16	모포, 가방	2점
			김정복	12	가방	1개
			이용국	19-21	낚싯대등	3점
			최영식	22-24	낚싯대등	3점
			김정복	29	키타	1개
	1719	윤진동 폭력 행위 등	최상호	1	주민등록증	1매
			성명불 상	3-7	손목시계등	5점
			"	9-10	손목시계등	2개

연 도 연 도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죄 피고인	명 환부인	압 수 물 전		
			번호	물 건	명 수 량
1974	1719 윤진동 폭력 행위 등 성명불 상		12	오리엔탈손목시계	1개
	"	15-20 엔트라손목시계등			6점
	"	22, 29 포나손목시계등			2개
	1860 홍선언 야 주 침 절 도 "	4	자전거		1대
	1955 정영동 폭력 행위 등 정영동	1	안전벨트		1개
	2382 김창근 절 도 등 성위조	1	석탄삽		1개
	2763 허병택 사 기 백재현	1-4	제약서등		4점
	3162 백대선 상습야간주거침 장태선 절 도	4	캐네디 6석락티오		1대
	3606 이재문 절 도 등 송안민	1-3	자동전화기등		3점
	3639 오흥천 야 주 침 절 도 김병식 고인호	1	곤색하의		1점
		2	카키복상하		1벌
	3733 김영학 야 주 침 절 도 구금순	3	황색동잠바		1점
	3761 조중환 무 고 등 조중환	1	계약서		2매
	3888 문종수 횡 령 문종수	1	금전출납부		1권
	3992 현익택 의료법 위반 김내선	1-2	회원카드통		2점
	4088 최송자 폭력 행위 등 박춘택 이만희	1, 2	작서		1매
		3	약속어음		1매
	4223 하갑순 야 주 침 절 도 배양님	3	한은500원권		10매
	4226 이화순 식 품 위 생 법 이화순	1-4	양철통등		4점
	4248 신준기 도로운송법 신준기	1-6	도라이바등		6점
	4285 박만화 야 간 주 침 절 김남순	1	남자오바		1점
	4293 이동표 사 기 이동표	1	영수증		
	4301 박준국 특 수 절 도 성명불 상	1	한은	2,800원	

연 사 전 번 호	도 연 수 번 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명 환부인	암 수 물 전		
				번호	물 전	명 수 량
1974	4301	박준국 특수절도서태석	2 한은			1,800원
		성명불상	3 한은			1,000원
	4343	박재호 업무상횡령	박재호	1-4 퇴직금지급영수증등		4점
	4360	김종석 사문서위조	김종석	1-4 한은		17,400원
	4389	박재영 폭력행위등	윤영옥	1 투비스타반지		1개
	4432	박재호 부정수표법	박재호	1 당좌수표		1매
	4453	권상현 철도조재우	조재우	1-2 카시미통이불등		2점
	4458	권재천 상해	이동식	1 금고		1개
	4706	박상열 주거침절도	정순갑	1 까스라이타		2개
		김묘연	2 텔레비전			1점
		정순기	3 마후라			1점
1975	1003	이순자 특수절도	성명불상	1-6 비니투롭바등		6점
	3046	이영진 도박	이영진	1 한은		40원
		김창덕	2 한은			50원
		정시태	3 한은			40원
		주철희	4 한은			30원
	3232	김종구 철도배대경	배대경	1 미제청바지(중고)		1점
	3269	김길석 사기	박동소	1 약속어음		1매
	3339	이선율 주거침절도	성명불상	2-3 동키스파니등		2개
	3358	김해동 폭력행위등	허경수	1 톱		1개
	3476	정원조 산림법	성명불상	1 환가대금	22	200원
	3466	배병재	"	1 환가대금		360원

연 사 전 번 호	도 연 수 번 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수 물 건		명 수 량
				암 번 호	물 건	
1975	3467	시호석 산 림 법 성명불상	1	환가대금		950원
	3468	박임술	"	"	1 환가대금	100원
	3469	여태화	"	"	1 환가대금	200원
	3470	신맹용	"	"	1 환가대금	2,100원
	3477	김군식	"	"	1 환가대금	200원
	3494	배해천	"	"	1 환가대금	400원
	3498	백정숙	"	"	1 환가대금	600원
	3509	박순동	"	"	1-2 환가대금	1,500원
	3510	신영덕	"	"	1 환가대금	1,000원
	3511	이계훈	"	"	1 환가대금	200원
	3512	이방남	"	"	1 환가대금	2,750원
	3515	김실근	"	"	1 환가대금	600원
	3517	조현우	"	"	1 환가대금	400원
	4277	이상준 공문서위조동행 사	이상준	2	전당표	1매
	4415	강성구	"	강성구	1 강성구 주민등록증	1매
	4477	김한우 공 조 (사건)	김한우	1-31	당좌수표 등	31매
	4713	채상목 절 도	채상목	1-2	보자기 등	3점
	4714	박준호 특 수 절 도	"	1-7	운동복 상의 등	7점
	4717	최만수 절 도	"	1-2	치마, 무용복	8점
	4726	박고홍	"	"	1-9 풀덴치마등	15점
	4730	노옥순	"	"	1-3 링크담요등	9점
	4926	김분휘	"	"	1-2 비로드여자용복지등	11점
	4956	김을태	"	"	1-5 어린이옷감등	5점

23

39

1976. 1. 13. (화요일)

## ○정 정

판보 제7238호(1976. 1. 6)에 게재된 전설부동고 제143호에 아래와 같은 오류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정정한다.

1976년 1월 12일

## 전설부장관

## 면 행 오 정

제 37면	제 1행	금지구역	금지규격
제 37면	제 11행	34. 23	84. 23

판보 제7240호(1976. 1. 8)에 게재된 보건사회부령 제507호(식품위생법시행규칙증개정령)에 "제12호"로 한다.

조의 2"중 다음 부분을 전부 삭제 정정한다.

1976년 1월 9일

보건사회부장관

제12조의 2 중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로, "영 제9조제32호 내지 제42호"를 "영 제9조제38호 내지 제46호"로, "영 제9조제5호 내지 제30호 및 제43호"를 "영 제9조제11호 내지 제37호 및 제47호"로 한다.

판보  
제  
7  
2  
4  
4  
호면당  
단  
1  
80  
전
 관  
집  
총  
무  
처  
  
 일  
례  
대  
한  
문  
사  
  
 (75)  
6  
1  
6  
1  
2  
9

 70  
4  
3  
3  
1

24